

국립남도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제정	2004. 7. 19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4호
개정	2008. 2. 1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17호
개정	2009. 12. 8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27호
전부개정	2017. 7. 13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41호
개정	2020. 1. 8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51호
개정	2021. 12. 21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59호
개정	2025. 1. 22	국립남도국악원 예규 제 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로 일정기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
2. 휴가(병가, 공가 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
3. 그 외 신체상 장애 등으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후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

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숙직근무자가 제8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각 사무실 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출입여부 확인·통제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태만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1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이 외에 원장은 국립국악원장을 통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14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각 과장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과장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각 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③ 각 과장은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상근무조 내에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16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각 과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과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행정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속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9호, 2025.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